

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당 지급 지침

제 1조(목적) 이 지침은 참여연구원에게 해당 연구과제의 기여도에 따른 연구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성과의 창출 및 확산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정의) 연구수당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및 장려금을 말한다.

제 3조(평가 및 평가기준) ①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 다만 지원기관의 사업규정 또는 지침에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는 지원기관의 사업규정 또는 지침을 따른다.

② 평가기준은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(별표1)의 5가지 평가항목을 따른다.

제 4조(지급) ① 연구수당은 당초 계상금액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.

②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 전원에게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. 단, 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③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시작일로부터 연구종료일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으나, 연구개시시점에 일괄지급은 불가하다.

부칙

제 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연구수당은 본 지침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되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.

< 기여도 평가 지표 >

- ① 이해력 : 연구과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목표에 맞게 진행하는지 평가
- ② 창의성 :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
- ③ 성실성 : 연구 참여과정에 대한 성실성 평가
- ④ 협동성 : 참여연구원과의 협업 능력을 평가
- ⑤ 성과기여도 : 각종 연구결과물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

< 평가방법>

1.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함
2. 연구과제의 규정 및 계획에 따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함
3. 각 평가지표별 합계는 20점이 되도록 평가대상자에게 배점
4. 대상자합계 : 기여도와 동일
5. 금회 지급액 : 연구수당 총지급액 * 기여도(%)

* 기여도 평가서 입력 및 출력후 연구책임자 날인하여 연구비 지급신청서와
같이 제출